

# 2013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개정내용

## □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 확인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 사유
<p>○(활동지원기관) 활동보조인 교육희망자의 경우, 활동보조인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</p> <p>*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'을 명시</p> <p>- 활동보조인 교육 추천시 결격사유 해당여부, 활동시간을 확인하고 교육일정 및 채용시기 등에 대한 기본사항 설명</p> <p>○(활동보조인 교육기관) 교육희망자가 지역소재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, 교육기관 담당자는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의 해당여부 등을 확인</p>	<p>○ 활동지원기관이 결격사유의 해당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</p> <p>- 다만,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신청자에게 활동보조인 교육안내를 통하여 본인 스스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</p> <p>○ 결격사유 해당여부 조회 방법 및 절차 구체화</p>	<p>-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 주체를 활동지원기관으로 일원화하고 그 방법, 절차를 구체화함</p>

□ 활동지원 급여비용 산정기준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 사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각 활동보조인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3시간의 범위내에서 급여비용의 75%로 산정</li> <li>- 단, 심야 및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경우에는 가산수가의 50%만 산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현행과 같음)</li> <li>- (삭제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심야·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경우에도 일반수가와 동일하게 급여비용의 75%를 산정하도록 함</li> </ul>

□ 개정사항 시행일 : 2013.11.1.